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17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용민 · 김의겸 · 서영교
박지원 · 김한규 · 김동아
김남희 · 이성윤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사처검사”를 “특별검사”로, “특별검사의 경우”를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를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같은 법률의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0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검사의”를 “검사 및 군검사의”로 한다.

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1870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1870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생략)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u>대검찰청</u>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경찰청</u> ,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 ----- ----- <u>공소청</u> ----- ----- <u>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u> ----- ----- ----- ----- -----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u>대검찰청</u>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경찰청</u>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④ ----- ----- <u>공소청</u> ----- -- <u>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① (생략)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⑥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우-----
-----.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① (현행과 같음)
- ② -----

-----공소유지
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⑥ (생략)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생략)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
한다.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
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
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
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다만,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대
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같은 법률의 특별검사보의 권
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소청
법」-----

--검사 및 군검사의-----

-----.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 ⑤ (생략)

법률 제21870호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1조제8항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

⑧ -----
-----지방공소청장-----

-----.
-----.

제15조(보수 등) ① -----
-----광역공소청장-----
-----.

② -----
--지방공소청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870호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직무와 권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절차와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검사 또는 파견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③·④ (생략)

지방공소청장-----

-----.

<삭 제>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